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영태 의원 외 1인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영태·소진혁 의원(2인)

찬 성 자: 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
김춘남·신용하·안주찬·이상호
정지원 의원(9인)

1. 제안이유

구미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경관 개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구미시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야간관광 및 야간관광사업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9호~제10호)
- 나.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22조)
- 다.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안 제23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
- 2) 「관광기본법」 제6조
- 3)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나. 부서검토: 낭만관광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10.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6장(제22조 및 제2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야간관광 활성화

제22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의 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 관련 기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및 장려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3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야간관광사업 발굴·육성 사업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관광업무 위탁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 관련 기관 유
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및 장
려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
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3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
반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
츠 개발

3. 야간관광사업 발굴·육성 사
업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
한 사업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
구·조사 사업

<신 설>

제22조 (생 략)

제23조(대상 업무) ① 제2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② (생 략)

6.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관광업무 위탁

제24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5조(대상 업무) ① 제24조-----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관광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 정책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낭만관광과

조 례 명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주요 사항

- 야간관광 및 야간관광사업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9호~제10호)
-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25조)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안 제26조)

검토 결과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주기적인 계획 수립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야간관광 활성화 및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진흥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해당없음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 조례안 제26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2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사업은 앞으로 세부사업 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낭만관광과 관광마케팅팀 김유진(☎054-480-2662)